

긴급특명, 담배자판기 규제 완화

現 자동판매기시장은 커피, 복합형, 캔자판기 등의 주력기종의 수요감소로 시장상황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새로운 시장확대의 돌파구를 열 수 있는 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책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있어선 대중적 수요을 창출할 수 있는 신제품의 상품화도 중요하겠지만 현행 규제에 묶여 있는 담배자판기, 주류자판기 품목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가 절실한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본 협회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자판기 신규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산자부 규제완화심의위원회를 통해 『담배자동판매기 외부설치 규제 완화』대상과제를 제출했다.

이 대상과제를 통해 협회는 청소년 흡연문제를 이유로 한 담배자판기 외부설치 규제는 그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보다는 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해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제 부터라도 무인유통기기로서의 그 본연의 가치를 인정, 규제를 풀어 주어야 한다고 산업계의 간절한 열망을 피력했다.

현 재 담배자동판매기 외부설치 규제완화 대상과제는 산자부내에서 본격 검토가 되고 있다. 규제완화심의위원회는 우선 자판기 소속과인 반도체 전기과의 검토의견을 수렴하고 실무위원회 상정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실무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정부관련부서, 학계, 변호사회, 소비자단체, 산업계 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의결을 하게 되고 의결내용에 따라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게 된다.

앞으로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 날지 속단하기 힘드나 청소년보호문제가 걸린 이 사안은 결코 쉽게 해결될 사안으로 보기 힘들다. 국민건강은 물론 청소년 건강에 관련된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고 소비자 단체의 큰 반발역시도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청소년보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으로 담배자판기 설치를 허가해 달라는 주장은 가능성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산업계에서 근본적인

청소년 보호문제에 어떻게 자율대책을 세울 것이냐 하는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만약 담배자판기를 통해 청소년흡연방지 문제를 확실히 해결 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면 무조건 담배자판기 설치를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산업계는 이에 대해 크게 두가지 방향을 잡아 자율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에 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이 담배자판기 사용을 막기 위해 향후 주민등록증, 전자화폐, ID 카드를 대상으로 하는 연령인식장치를 채택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한 신상인식 및 대금지불·판매장치 등을 개발 도입하는 방법이다.

이같은 방안은 산업계의 치밀한 기술개발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시행 도입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담배자판기 규제를 푸는데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들임에는 분명없다.

두 번째 방법은 가장 손쉽고도 기본적인 자율대책이라 할 수 있는 일정시간대 ON-OFF기능의 시행이다. 이 방법은 청소년 등하교 시간대에는 담배자동판매기 기계가 동을 중지시킴으로서 자판기 사용을 억제시킬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가까운 일본의 경우 이 방법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제 이러한 자율규제 대책을 적극 시행해 가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이치처럼 산업계가 이러한 대안제시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풀어 달라 주장하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에 회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협회는 우선 연령인식장치 기술개발 도입을 위해 업계 공동기술개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관련업계와 더불어 이러한 방향으로의 가시화된 청사진이 마련된다면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의 당위성도 당연 높아지게 된다.

흐

회들 담배는 국민건강 측면에서 볼 때 백해무익하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하지만 흡연행위 자체가 불법적이거나 강제적으로 규제할 사안은 아니다. 금연확산을 위한 국민적 계몽과 홍보가 중요한 것이지 무작정 흡연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는 시대적인 흐름에 역행한다.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필수불가결한 유통기기로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담배자판기도 그 존재가치를 마땅히 인정해 주어야 한다. 담배자판기가 설치된다고 청소년들의 흡연환경이 차단 억제된다는 발상은 이미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55만대 담배자판기가 보급된 일본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담배자판기가 외부철수된 우리 청소년들의 흡연율 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은 이를 여실히 반증하고 있다.

반대 한 마리 무서워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식의 과당조치는 이제 현실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한다. 산업계가 자율규제를 적극 실천한다면 담배자판기도 이제는 설치환경을 확보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다.

본 협회의 담배자판기 규제완화에 대한 대정부건의가 이러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비록 이번 건의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담배자판기 설치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산업계의 노력은 끊임 없이 계속될 것이다.

수면위로 불거져 나온 담배자판기 문제는 반드시 풀어 나가야 할 산업계의 숙제이다.

담배자동판매기 외부 설치 규제 완화 대상과제

근거 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 2항에서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외에는 담배자판기를 설치하여 판매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그 세부 내용으로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담배자동판매기가 설치 가능한 장소로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 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법 제9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 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로 한한다고 규정.

연 황

- 담배자판기의 설치를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로 제한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의 발효로 외부 설치된 자판기가 지난 96년~97년에 걸쳐 전량 철수되는 상황에 이르렀음.
-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으로 담배자판기 설치를 한정하는 내부 로케이션의 경우 대부분 유인 담배판매를 행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판기 운영 효율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 담배자판기 시장은 완전 존립기반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
- 작년 본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담배자판기의 생산 수치는 5대에 그칠 만큼 담배자판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은 규제 차원을 넘어 산업을 완전 고사시키는 철퇴적인 조치로 작용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국민건강증진법 현행규제는 국내 커피, 캔 다음가는 유망시장이었던 담배자판기 시장을 완전 상실케 만들어 전체 자판산업을 위축시키는 제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각 관련업체 입장으로 보면 그동안 온갖 심혈을 기울여 축적해 놓은 담배자판기 관련기술을 그대로 사장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낭비라 할 수 있음.

문제점

담배자판기의 외부 설치를 금지하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

1) 담배자판기를 과연 미성년자 흡연조장의 주범으로 볼 수 있나

▶ 담배자판기 설치를 규제한다고 미성년자 흡연환경을 철저히 차단될 수 없음. 담배자판기를 미성년자 흡연조장의 주범으로 보아 설치를 규제하는 현 조치는 마치 빈대 한마리 잡으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것과 다를바 없는 정도를 넘어선 과당대응이라고 사료됨.

▶ 개인의 기호품인 담배는 기존 유인 유통구조에서 미성년자 판매를 규제한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미성년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현실에 있어, 자판기가 미성년자 흡연에 끼치는 영향은 유통기기로서의 존재기반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절대적이지 못함이 그간 입증되었음.

▶ 담배자판기 설치가 규제된 지금, 예전에 비해 미성년자 흡연율이 오히려 높아진 상황에 미루어 볼 때 현재의 담배자판기 외부 설치규제는 실효성이 높은 근본적인 대책이라 할 수 없음.

2) 담배판매 영세사업자의 권리보호 측면

▶ 담배판매에 종사하는 지정소매인의 대부분은 영세업자들로서 영업장 면적이 3~4평 이하의 좁은 공간이고, 변변한 영업장을 갖추지 못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점포내부의 담배자판기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현행 내부 설치기준은 실질적인 전면금지 조치와 다를 바 없는 상징적인 허용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음.

▶ 자동판매기의 설치목적이 무인판매를 통한 인력 및 비용절감에 있다 할 때, 영업장 내부로 설치장소가 제한되면 자동판매기 설치목적인 무인판매 기능이 상실되며 영세소매인의 판매비용 부담이 가중되게 됨.

3) 무인 유통기기로서의 편리성 제고 측면

▶ 유통구조가 대형화됨으로 인해 영세 구멍가게 및 슈퍼 등 소매업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 있어 담배의 구입ル트 역시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 특히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져 무인유통기기인 담배자판기의 필요성 역시도 크게 높아지리라 예상.

▶ 또한 향후 예상되는 인건비 증가 요인과 점차 자동화, 효율화를 추구하는 라이프싸이클 변화요인을 고려할 때 유인판매와는 차별화된 무인판매 구조를 인정하고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음.

▶ 담배자동판매기는 무인판매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소매인의 영업활동이 잠정적으로 중단되는 심야 및 새벽시간대(22:00~08:00)와 공휴일 등에 애연가들에게 담배구매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기능의 하나로 하고 있는 바, 영업장의 폐점시(심야 및 직장인 출근집중 시간대) 애연가의 담배구매기회를 차단하게 되어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자판기의 효용가치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케 됨.

4) 담배자판기의 천국 일본시장의 예

▶ 일본의 경우 지금까지 527,220대의 담배자판기가 보급되어 자판금액으로 1조 6,300 억 시장을 형성하고 있을 정도로 담배자판기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기기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음.

▶ 일본은 이처럼 많은 담배자판기가 생산 보급되었어도 미성년자 흡연율은 우리보다 크게 낮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 미성년자의 흡연증가를 자판기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음.

▶ 일본 자판산업계는 담배자판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미성년자 흡연문제에 대해 방과후 하교시간대 일정시간 동안은 기계가동을 OFF하는 등의 대책으로 산업계 자율규제를 행하고 있음.

5) 유망 산업 분야 발전기회 박탈 측면

▶ 산업계는 담배자판기의 철수조치로 수량으로는 12,000여대, 금액으로는 260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외에도 기술개발 투자분, 재고분 등의 손실로 제조업체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담배자판기 전문업체였던 중견기업 합동정밀은 경영난 악화로 부도에 이르는 상황에 처하게 됨.

▶ 근본적인 문제는 산업활성화에 있어 3번째로 큰 시장의 상실로 자판기 시장발전에 크나큰 한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수출시장 개척의 기회도 상실하고 있는 상황.

제안지의 개선방안

■ 청소년 흡연문제를 이유로 한 담배자판기의 외부설치 규제는 그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린 채 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무인유통기기로서의 가치를 인정, 규제를 풀어 주어야 한다고 봄.

■ 산업계에서는 규제완화시의 자율규제방안으로 청소년의 하교시간대에는 OFF기능을 걸어 가동을 중지시키거나 향후 주민등록증, 전자화폐, ID카드 등 연령인식장치의 채택을 연구하는 등 적극적인 업계 자율 대책을 강구, 자판기 설치로 인해 야기되는 청소년 흡연문제에 적극 대처할 예정임

■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필수 불가결한 유통기기로서 필요성이 높아지는 담배자판기를 산업계의 자율대책 속에서 건전한 시장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존립기반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봄.

	시행령(안)	개정요청	비 고
법령개선	2.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담배를 판매하는 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장내부설치는 불가능함. 따라서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	2.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점이 협소한 관계로 영업장의 출입구 전면이나 소매인기의 순기능,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이 가능한 지역.	소매점이 협소한 관계로 영업장의 출입구 전면이나 소매인기의 순기능, 미성년자 보호를 고려할 때 출입구와 근접한 장소라면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음.
방안예시	3.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다만, 법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세 미만의 자가 이용할 수 없는 장소에 한한다.	3.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한 시설중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 흡연구역은 법으로 흡연을 허용하는 장소, 따라서 다만 이하내용 삭제 요청. - 19세 미만의 자가 이용할 수 없는 장소라는 모호한 법은 있을 수 없음.